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45,820,830	73,374,625
일반회계	2,212,190,897	66,365,727
특별회계	233,629,933	7,008,898
공기업특별회계	191,757,519	5,752,7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5,149,430	2,554,48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608,089	3,198,243
기타특별회계	41,872,414	1,256,172
주택사업특별회계	101,000	3,0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213,636	396,409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19,000	21,57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57,960	70,739
교통사업특별회계	22,496,218	674,887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	150
수질개선특별회계	2,904,000	87,1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으로 한다.

제 6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5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